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u>4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 투자신탁[주식]</u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---- --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%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% 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---- --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<u>2%</u>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<u>1%</u>. <u>다만,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%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</u>

<p>11. (생략)</p>	<p><u>1%에서부터 1.5%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